

# 2026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 참여 협동조합(연합회) 모집공고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협동조합(연합회)의 국내 판로 확대 및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한 ‘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’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3월 24일  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

<b>1</b>	<b>사업개요</b>
----------	-------------

- 사업목적** : 온라인 전용기획전 개최 및 오프라인 유명박람회 입점 지원 등을 통한 매출증대로 소상공인협동조합(연합회) 자립기반 마련
- 사업기간** : '26. 4월 ~ 12월
- 지원규모** : 40개사(온·오프라인 통합 지원)
  - \* '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**
- 신청방법** : 사업 홈페이지(coop.sbiz.or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- 신청기간** : '26. 3. 24.(화) ~ '26. 4. 14.(화), 16:00
- 지원대상** : ①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, 조합원 50%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(연합회) 또는 ②자율상권조합
- 문의처**

구분	문의처	전화번호	e-mail
일반문의	전문기관 (소상공인방송정보원)	042-363-5537,5539,5586	coop2026@sebis.or.kr
접수확인	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	042-363-7928	coop@semas.or.kr

- 지원내용 : 온라인 유통플랫폼 전용 기획전 개최, 라이브커머스, 오프라인 유명 박람회 입점 지원 및 부스 컨설팅 등

구분	세부내용	
(필수)	① 선정 이후 공단이 지정한 온라인 유통플랫폼 <b>최소 1곳 이상에 입점 및 상품등록</b> * 등록기한 : 선정일 기준 3개월 이내 ** 온라인 유통플랫폼(안) : 11번가, G마켓 등 4개사 내외 ② 판매역량 증진을 위한 온라인교육* 수수료 필수 * 교육 예시 : AI 활용 기획·판매전략, 온·오프라인 마케팅 교육 등	
공통	MD상담회 및 유통상담회	온·오프라인 상품경쟁력 진단을 위한 전문가 상담, 컨설팅 지원
온라인	온라인 유통플랫폼	동행축제 연계 국내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활용한 협동조합 전용 기획전 운영, 할인쿠폰 및 프로모션 지원
	라이브커머스	크리에이터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및 연계 특별 기획전 진행
	T커머스	쇼호스트를 활용한 T커머스(홈쇼핑 등) 방송 및 연계 특별 기획전 진행
오프 라인	단체박람회	공동관 형태의 단체참가지원 및 친환경 포장용품 지원
	개별박람회	협동조합 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
	부스 디스플레이	전문 비주얼디렉터의 협동조합 부스 컨셉 설정, 상품 진열 방법, 상품 홍보 스토리텔링 등 상품 홍보 지원
	팝업스토어	동행축제 연계 대형 백화점 및 아울렛 행사 입점 지원 동행축제 연계 플리마켓, 지역행사 등 지역거점 팝업 입점 지원
연계 지원	타 사업 연계지원	수출, 펀딩연계 등 공단 및 타 지자체·기관 사업 연계 지원

※ 조합별 지원 항목은 전문가의 사전 진단 및 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

3

지원대상 및 요건

- 지원대상 \*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이 완료된 조합 및 연합회에 한함
  - 협동조합기본법,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, 조합원 50% 이상이 소상공인\*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
  - 또는,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

- 1) 협동조합기본법 :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
- 2) 중소기업협동조합법 :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,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(연합회)
- 3)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: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율상권조합

\* 소상공인 여부 확인방법은 "[참고3]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기준 및 확인방법" 참고

□ 자격요건

구분	자격요건
공통요건	· 통신판매업 신고증 보유(발급예정 포함) *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예정인 경우, 선정일 기준 1개월 이내 보완제출 必
자격요건 (①,②번 中 택1)	① (매출액) '25년 조합(연합회) 매출 1천만원 이상 ② (매출증가) '24년 대비 '25년 조합(연합회) 매출액 증가율이 5% 이상 * '25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원불가하나, '25년~'26년 신규 설립 협동조합은 신청 가능

□ 우대사항(최대 10점)

구분	우대사항 세부내용
①청년(2점)	이사장이 청년일 경우 * 청년 : 공고일('26.3.24)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('86.3.24 이후 출생자)
②여성(2점)	이사장이 여성이거나 또는 조합원 중 여성기업(확인서)이 있는 경우
③장애인(2점)	이사장이 장애인(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)이거나 조합원 중 장애인기업(확인서)이 있는 경우
④BM경진대회(2점)	'23~'25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BM경진대회 수상이력이 있는 경우
⑤백년소상공인(5점)	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1인 이상이 '백년소상공인'으로 지정된 경우
⑥제조기반(5점)	조합 소재지가 소공인집적지(구) 내에 위치한 제조업 영위 협동조합
⑦기업가형 소상공인(5점)	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1인 이상이 아래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-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, 로컬크리에이터 육성, 로컬브랜드 창출

- \* ②~③ 해당 시 : (조합)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해당여부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
- \* ④~⑦ 해당 시 : (조합)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해당여부 기재 → (공단) 유관부서 통해 대한 가점 대상자 여부 확인 및 확인된 이력에 한해 가점 부여

□ 참여제한 :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

**<신청 제외 대상>**

- ▶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·지침에 따른 결격사유(수행배제 등)에 해당할 경우
- ▶ 협동조합(연합회) 및 조합 이사장(연합회장)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
- ▶ 휴·폐업중인 협동조합(연합회) 또는 조합원(회원)의 50% 이상이 휴·폐업중인 협동조합
- ▶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
- ▶ 과거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
- ▶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(참고2)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(연합회) 및 조합원(회원)
  - \* 주된 사업(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) 기준
- ▶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
  - \* 단,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(협약서 제출 필수)

**※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**

- 대기업 확인 : <http://www.kreport.co.kr/>
- 프랜차이즈 확인 : <https://franchise.ftc.go.kr/>
-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: <http://sminfo.smba.go.kr> (로그인 필요)

- ▶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**4 신청 및 접수**

□ 신청기간 : '26. 3. 24.(화) ~ 4. 14.(화), 16:00

\* 2026. 4. 14.(화) 16시 00분 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(이의신청 불가)

□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<http://coop.sbiz.or.kr>, 협업활성화 시스템)

지원분야	세부내용
① 회원가입	• 조합 이사장(연합회 회장)이 '소상공인24( <a href="https://www.sbiz24.kr">https://www.sbiz24.kr</a> )' 홈페이지 회원가입
② 신청서 작성	• '협업활성화( <a href="http://coop.sbiz.or.kr">http://coop.sbiz.or.kr</a> )' 홈페이지에 조합 이사장(연합회 회장)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, 증빙서류 등록 - 사업신청 시 통합 선택, 사업신청 및 증빙서류 스캔 등록 -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(발급처 등)는 [참고4] 참조

**※ 신청 기간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, 선정 전·후 지원대상 요건 미충족이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선정 이후라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**

□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

제출서류	검토사항	제출범위	
		조합	연합회
작성서류	(1)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(* 신청화면 內 “자가진단” 체크)	조합	연합회
	(2) <서식1> 사업계획서	조합	연합회
	(3) <서식2>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* 단, 선정 이후 조합원 전원의 동의서 제출 必	이사장 등	연합회장 등
	(5) <서식3> 사업 참여 협약서	등기임원	등기임원
	(6) <서식4> 조합원 명부		
	아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류 제출 -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- 발기인, 성명, 업체명, 사업자번호를 포함하여, 조합원 전원을 확인 가능해야 함 - 법인등기부등본 상 조합원이 ‘법인’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- 조합원별 소상공인 해당 여부 기재 필수	조합	연합회
통신판매업 신고증 (선택)	- 상호명 및 대표자 정보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과 일치 * 선정일 기준 1개월 내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 必	조합	연합회
협동조합 정관	- 각 정관 1조 조합 설립 기준 법령 확인 필수 -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이익배당내용 포함 필수	조합	연합회, 회원조합
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NICE 연계	- ‘말소된 등기사항 포함’하여 ‘제출용’으로 발급 - 등기임원이 ‘법인’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-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	조합	연합회
사업자 등록증명 NICE 연계	-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* 단, 선정 이후 사업체 보유 조합원 전원의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必	조합 등	연합회 등
세금납부 확인 NICE 연계	-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* ‘체납 없음’이 증명되어야 함 -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	조합, 이사장	연합회, 회장
매출증빙 서류 NICE 연계	-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(1) 표준재무제표증명 (2) (일반과세자)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(3) (면세사업자)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(매출액) ‘25년 매출 1천만원 이상’ → ‘25년 매출 서류 (매출증가) ‘24년 대비 ‘25년 매출 5%이상 증가’ → ‘24, ‘25년 매출 서류	조합	연합회
가점 증빙 (해당 시)	- (여성) 조합원 여성기업확인서 - (장애인) 이사장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, 조합원 장애인기업확인서 - (BM경진대회, 백년소상공인, 제조기반, 기업가형소상공인) 사업계획서 양식 내 해당사항 기입	조합 해당자	연합회 해당자

## □ 유의 사항 : 사업 신청 시 아래 유의사항 필독

## 유의사항

-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·지침에 따른 결격사유(수행배제 등)에 해당할 경우,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
- ② 사업신청은 온라인만 가능하며 조합 이사장(연합회장)이 소상공인24 사이트 (sbiz24.kr)에 회원가입 후 협업활성화 시스템(coop.sbiz.or.kr) 통해 신청  
\* 사업 선정 이후 참여 조합원(회원) 가입 및 필요서류 제출 필수
- ③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(또는 전문기관)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취소로 간주하며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
- ④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 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,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협동조합에게 책임이 있음
- ⑤ 同 사업 선정 시 협약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협동조합(연합회) 현황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, 미 준수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(지원금 환수) 사유가 될 수 있음
- ⑥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교부받거나, 사업신청,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재조치 및 민·형사소송 가능
- ⑦ '26년 소상공인협업활성화 공동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
- ⑧ 선정 이후라도 지원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## □ 의무 사항 : 사업 선정된 조합은 아래 의무사항 이행 필요

## 의무사항

- ① 선정 통보된 협동조합(조합원 및 사업 담당자)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필수(전체 수강) 참여
- ② 박람회 참가조합은 박람회 지각, 무단불참, 운영인력2명 미상주, 무단 조기종료 등 불성실한 참여태도를 지양해야 하며,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에 참여해야 함.
- ③ 사업 선정일로부터, 3개월 내 공단이 지정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 중 최소 1개사 내 입점 및 상품등록 해야 하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시 사업 중도포기로 간주
- ④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조합(연합회)은 공단의 요청자료\* 및 재무현황 등을 공단에 제공해야 하며, 미 준수시 선정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
\* 1)공단에서 요청하는 조합현황 정보, 2)재무정보 등 현황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제출(연1회)
- ⑤ '26년도에 지원받은 조합은 차년도 실시되는 실태점검 및 성과분석 조사에 응하여야함

6

평가 및 선정

□ 평가 절차 : 총 3단계의 점검 및 평가·심의를 통하여 선정

<b>① 서류 검토</b>	▶	<b>② 선정평가(서면평가)</b>	▶	<b>③ 결과통보</b>
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		전문기관의 적합 여부 평가		최종 선정 결과통보
'26. 4월 중		'26. 4월 말		'26. 4월 말

□ 평가 방법

① (서류검토) 사업계획, 증빙 등 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 여부 등 검토

- 조합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, 보완요청 및 반려처리

< 서류검토 후 처리방법 >

구분	처리조건	후속조치
접수	-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는 경우	- 선정평가 등 향후 추진 일정 안내
보완	-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* 보완에 응하지 않고, 기 제출한 서류 등을 재제출하는 경우 반려(평가제외) 될 수 있음	- 보완사항 안내 * 보완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, 미 보완 시 반려(평가 제외) ** 부득이한 경우 보완기한(3일 이내)을 연장할 수 있음
반려	- 자격요건이 부적합한 경우	- 반려(탈락)사항 안내

② (선정평가) 전문기관에서 신청 협동조합(연합회)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선정심의회(선정평가) 진행

- (평가항목) 사업수행계획의 사업성, 구체성, 시장성, 가격경쟁력 등

③ (결과통보) 홈페이지 신청 결과 확인 및 전문기관 이메일 개별 통보

□ 최종 대상자 선정

○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자 및 예비자를 결정하며,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정 취소·포기자 등이 발생할 경우 예비 중 추가 선정

- 단, 예비자 유효기간은 최초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

□ 최종 지원 내용 선정

- (사전진단 및 컨설팅) 개별 협동조합의 상품 경쟁력, 유통 적합성 등을 사전 종합 진단하여 맞춤형 판로 추천·연계
  - 협동조합 사업 신청 시 개별 지원 내용 수요 조사 후 사업성을 바탕으로 선정, 전문가 진단을 통한 세부 지원 과업 확정

□ 사업 선정 후 추가 서류 제출

구분	제출서류	비고
선정 후 3일 이내	소상공인24( <a href="https://www.sbiz24.kr">https://www.sbiz24.kr</a> ) 회원가입	조합원 전원
	사업자등록증명	사업체 보유 조합원 전원
	소상공인 확인서류* * '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'을 통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력(유효기간 내)이 있는 조합원은 제출 예외	조합원 50% 이상

※ 선정통보 이후, 기한 내 ①조합원 전원 회원가입, ②사업체 보유 조합원의 사업자 등록증명, ③조합원 50% 이상의 소상공인확인서류 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**지원요건 불충족으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**(③은 자율상권조합의 경우 예외)

※ 조합원(연합회원) 대상 소상공인 확인서류 인정범위

(제출권장) 소상공인 확인서('선정일' 기준 유효기간 이내)

(인정가능) '23년~'25년 매출액 확인서류 + '25년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

<참고3>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기준 및 확인방법에 기재된 서류목록 참고

□ 향후 추진 일정

구분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모집공고										
지원조합 선정										
사업추진										
사업완료										

\*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**7** 문의처

구분	문의처	전화번호	e-mail
일반문의	전문기관 (소상공인방송정보원)	042-363-5537,5539,5586	coop2026@sebis.or.kr
접수확인	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	042-363-7928	coop@semas.or.kr